

별표2.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수업적평가 기준

가. 교육영역

항목번호	평가항목	평 가 세 부 기 준
1.10	강의	
1.11	강의시간	• $\text{Max}[90+(\text{연간수업학점수}-\text{연간책임시간})\times 5, 60]$ *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5점 감점 (윤강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감점)
1.12	수업평가	• 수업평가 평균백분위점수 $\times 0.75$
1.13	대단위강의	• $\text{Max}[(\text{강좌당학생수}-80)\times 0.25, 0]$(학부강의에 한함) * 3학점미만의 경우 : 산출점수$\times$해당학점/3학점
1.14	새로운 교과목 개발	• 과목당 50점
1.20	학생지도	
1.21	학생상담 실적	• 학생상담실적 건당 0.2점(전산에 등록된 경우만 인정)
1.22	학생지도 실적	• 과목당 지도 팀당 5점(창업실적까지 이어진 경우 팀당 10점), 상한 20점 ※ 단, 기업제안 유형 제외

나. 연구영역

평가항목	세 부 평 가 기 준
2.10	논 문(연간상한 100점)
2.11	• 국내학회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점 기타학회학술지 50점
2.12	• 국제학술지 SCIE, AHCI, SSCI 300점(다만, SCIE급 lecture note는 150점으로 한다) SCOPUS 저널 논문 150점 기타국제학술지 100점

다. 봉사영역

평가항목	업 적 내 용	비 고
3.10	교내봉사	
3.11	교무위원 80~100점	• 세부기준은 교무혁신처에서 결정,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
3.12	기타보직 15~80점	• 세부기준은 교무혁신처에서 결정, 겸직의 경우 상위점수 하나만 인정함
3.13	각종위원회(장) 5~20점	• 위원회 점수는 위원장이 위원회 참석여부 등을 기초로 부여하고, 당연직은 제외하기로 하다.(상한40점)
3.14	특별기여 0~40점	• 총장이 결정 또는 교무위원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(상한40점)
3.20	교외봉사	
3.21	학회활동 10~50점	• 회장 30~50점 • 부회장/편집위원장 15점 • 총무이사/간사/상임이사/학회지편집간사 10점 * 겸직시 한 학회당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*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학회에 한함
3.22	수상실적 0~20점	• 학술상 수상 20, 비학술상(국가기관 20, 기타민간기관 10)

라. 산학협력영역

항목번호	평가항목	평 가 세 부 기 준
4.10	산학협력 교육활동	
4.11	현장실무 교수법 개발	• 30점/건(학과에서 인정한 경우)
4.12	산업체 연계 종합설계(캡스톤디자인) 과목 운영	•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수행 지도 5점/팀
4.13	현장실습 지도	• 표준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지도 30점/명 (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) • 자율 현장실습 기업발굴 및 지도 10점/명 (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2배 반영) • 방문지도(본인발굴기업 외) 5점/명
4.14	산학협력 프로그램 학과생 지도	• 5점/건
4.16	학생취업지도	• 취업 학생 1인당 5점 • 현장실습 연계 취업 지도는 취업 학생 1인당 10점
4.17	학생창업지도	• 창업동아리 지도 팀별 학기 당 10점
4.18	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	• 교수 지도에 의한 학생 창업 기업 당 20점 • 프로그램 개발 20점/건 (기업/기관과의 MOU 및 위탁 운영 내용 등 산학연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
4.19	파란학기 기업제안 지도	• 5점/팀 (기업발굴까지 한 경우 10점/팀)
4.20	산학협력 연구활동	
4.21	특 허	• 특허 국제발명특허등록 150점/건 국내발명특허등록 100점/건 국내실용신안등록 50점/건 국제발명특허출원 20점/건 국내발명특허출원 10점/건 국내실용신안출원 5점/건
4.22	연구비 수주	• 책임 및 참여: 연구비 수혜액 0/H 1,000만원 당 150점 • 수주 기여: 연구비 수혜액 0/H 1,000만원 당 300점 (참여율에 따라 계산된 0/H 반영하고, 수주 기여는 산업체 연구비만 인정하며 최대 참여율 30%까지 인정)
4.23	기술이전 수입료	• 발명 이전(책임): 10점/1,000만원 • 중개 기여(참여): 30점/1,000만원 (수입료 실적에 대한 발명자보상금 산출 시 기여율이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기여율에 따라 계산된 수입료 반영)
4.24	기술이전 건 수	• 10점/매2건
4.26	창업	• 100점/건(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)
4.27	오픈소스SW 기여	• 10점/건
4.30	산학협력 봉사활동	
4.31	기술·경영자문 활동	• 산업체자문실적 5점/기관(연간상한 20점)
4.32	산학협력 관련 교내 TF/위원회 활동	• 5-20점/건(연간상한 40점)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TF/위원회에 한하며, 위원장이 평가하여 점수 부여(단, TF/위원회 활동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외)
4.33	유료 산업체 재직자 교육 운영	• 유료 수강생 최소 5명 이상의 재직자 교육 운영 10점/12시간(연간 상한 30점)
4.34	기업협업센터(ICC) 활동 및 운영	• 기업협업센터(ICC) 책임교수 50점 • 기업협업센터(ICC) 참여교수 최대 10점 (단, ICC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)
4.35	공유·협업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	• 공유·협업 프로그램 개발 20점/건 운영 10점/건 참여 5점/건 (개발/운영/참여는 각각 학기당 2회까지만 인정)